

國家均衡發展特別法令集

2004. 4. 1

國家均衡發展委員會
產業資源部

- 목 차 -

國家均衡發展特別法	國家均衡發展特別法施行令
第 1 章 總 則 1	제 1 장 총 칙 1
第 1 條 목적 1	제 1 조 목적 1
第 2 條 정의 1	제 2 조 그 밖의 낙후지역 1
第 3 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제 3 조 그 밖의 공공기관 3
第 2 章 국가균형발전계획 등 4	제 2 장 국가균형발전계획 등 4
第 4 條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 4	제 4 조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 4
第 5 條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 5	제 5 조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의 수립지침 등 5
第 6 條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 등 7	제 6 조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의 수립지침 등 6
	제 7 조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지침 등 7
	제 8 조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시 중요사항 8

國家均衡發展特別法	國家均衡發展特別法施行令
第7條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등9	제9조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정·보완시 중요사항8
第8條 시행계획의 협의·조정9	제10조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수립지침 등9
第9條 시행계획의 평가10	제11조 시행계획의 협의·조정9
	제12조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등의 자체평가10
	제13조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등의 종합평가10
	제14조 평가기준11
第3章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추진 12	제3장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추진 12
第10條 지역혁신체계의 구축12	
第11條 지역전략산업의 선정 및 육성12	
第12條 지방대학의 육성 등14	
第13條 지역과학기술의 진흥14	
第14條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 ..15	

國家均衡發展特別法	國家均衡發展特別法施行令
第15條 지역문화·관광의 육성 15	
第16條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16	
第17條 지역경제활성화의 촉진 16	
第18條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17	제15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17
第19條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18	제16조 기업의 지방이전 18
	제17조 대학의 지방이전 19
	제18조 수도권 관리의 기본방향 수립 19
第20條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20	제19조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20
第21條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22	제20조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22
第4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23	제4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23
第22條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23	제21조 위원회의 위원 등 24
第23條 조직 24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24
第24條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25	제23조 회의 24
第25條 임·직원의 파견 요청등 25	제24조 전문위원회 25
	제25조 자문위원 25

國家均衡發展特別法	國家均衡發展特別法施行令
제26 조 국가균형발전기획단 26	제26조 여론의 수집 25
제27 조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등 27	제27조 조사·연구의 의뢰 26
제28 조 시·도 지역혁신협약회의의 설치 등 .. 28	제28조 수당 등 26
제29 조 시·군·구 지역혁신협약회의 설치 등 29	제29조 운영세칙 26
제 5 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0	제30조 국가균형발전기획단 26
제30 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30	제31조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등 27
제31 조 회계의 관리·운용 30	제32조 시·도 지역혁신협약회의 구성 및 운영 등 28
제32 조 계정의 구분 30	제33조 시·군·구 지역혁신협약회의 구성 및 운영 등 29
제33 조 소속재산 30	제 5 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0
제34 조 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세출 32	제34조 결산보고서의 작성 30
	제35조 소속재산의 관리 31
	제36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중 제외사업 .. 33

國家均衡發展特別法	國家均衡發展特別法施行令
第35條 지역혁신사업계정의 세입·세출34	제37조 지역개발 및 토지관리사업의 범위 ..34
第36條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36	제38조 융자의 조건 등34
第37條 일시차입금36	
第38條 예산편성절차상의 특례37	제39조 예산의 신청37
	제40조 예산의 요구38
第39條 세출예산의 차등지원39	제41조 위원회의 의견통보39
第40條 유사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의 통합편성40	제42조 차등지원의 기준39
第41條 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40	제43조 세출예산의 통합편성40
第42條 예산의 전용41	
第43條 예산의 이월41	제44조 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예외40
第44條 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42	제45조 예산의 전용범위41
第45條 잉여금의 처리42	제46조 예산의 이월범위41

國家均衡發展特別法	國家均衡發展特別法施行令
第46條 권한의 위탁 43	제47조 권한의 위탁 43
第47條 회계사무의 위탁 44	제48조 회계사무의 위탁 44
第48條 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 45	
附 則	부 칙
	별 표 50
	별첨 시행령 주요내용 50

法	施 行 令
國家均衡發展特別法 制定 法律 第7061號, 2004.1.16 公布 (施行 2004.4.1, 특별회계 2005.1.1) 제1장 總 則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균형발전”이라 함은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혁신”이라 함은 지역의 인적자원개발·과학기술·산업생산·기업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는	國家均衡發展特別法施行令 制定 大統領令 第18346號 2004.3.29 公布 (施行 2004.4.1, 특별회계 2005.1.1) 제1장 總 則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그 밖의 낙후지역) ①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감소율·재정상황 및 소득수준 등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낙후지역을 3년마다 선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후지역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

法	施 行 令
것을 말한다. 3. “지역혁신체계”라 함은 지역혁신을 위하여 대학·기업·연구소·지방자치단체·비영리단체 등의 활동을 상호연계하거나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4. “지역전략산업”이라 함은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의 산업으로서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5. “낙후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 나.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 대상도서 다.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 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마. 그 밖에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건설교통부장관 등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해당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法	施 行 令
6. “농산어촌”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과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촌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그 밖의 공공기관)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4.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자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받은 법인 5.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6.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法	施 行 令
제2장 國家均衡發展計劃 등	제2장 國家均衡發展計劃 등
제4조(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이하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국가균형발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8. 지역금융활성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10.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1.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위원회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계획(이하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이하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이라 한다)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혁신발전계획(이하 “지역혁신발전계획”이라 한다)을 기초로 국가균형발전계획의 목표,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과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기초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을 반영하여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국가균형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法	施 行 令
③국가균형발전계획은 예산회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④국가균형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립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을 수립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의 수립에 있어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의 수립지침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의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法	施 行 令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 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실적과 당해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의 수립지침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이하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의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法	施 行 令
제6조(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이하 “지역혁신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지역혁신발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혁신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현황 및 발전역량의 분석에 관한 사항 3. 지역혁신을 위한 여건개선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혁신을 위한 시책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5. 지역혁신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2 이상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지침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지역혁신발전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지침을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法	施 行 令
④시·도지사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도 관할구역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적합하게 해당 시·도의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보완하여야 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협의 등에 응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의 지역혁신발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시 중요사항) 법 제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시·도가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소관 사업에 관한 사항 3. 시·도와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 4. 지역혁신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제9조(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정·보완시 중요사항)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혁신발전 목표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발전사업 추진체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투자재원의 변경에 관한 사항

法	施 行 令
제7조(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시·도지사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이하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지역의 혁신발전시행계획의 실적과 당해 연도의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수립지침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지침을 시·도지사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당해 연도의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또는 시·도의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시행이 당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조정을 요청받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조정을 하는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法	施 行 令
제9조(시행계획의 평가) ①정부는 부문별 시행계획 및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등의 자체평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전년도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미리 해당 시·도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등의 종합평가) ①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평가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경우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및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보고서를 반영하여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및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여야 한다.

法	施 行 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 보고서를 반영하여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및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결과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기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 2. 사업목표의 달성도 3.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法	施 行 令
제3장 國家均衡發展施策의 推進 제10조(지역혁신체계의 구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혁신체계의 유형개발에 관한 사항 2.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대학·기업·연구소·비영리단체·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역혁신 관련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지역전략산업의 선정 및 육성) ①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제3장 國家均衡發展施策의 推進

法	施 行 令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혁신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해당 2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전략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전략산업의 발전 및 혁신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法	施 行 令
제12조(지방대학의 육성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대학과 산업체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졸업생에 대한 채용장려제의 도입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우수졸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및 산·학·연 협력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지역과학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의 과학기술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	

法	施 行 令
3. 지역의 연구개발인력의 확충 등 과학기술역량의 제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간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통신 육성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주민생활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기반 육성 및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 및 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의 문화 및 관광자원의 개발·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문화 및 관광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문화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의 문화 및 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法	施 行 令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통망 등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소득창출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특성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지역경제활성화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의 고용창출 및 실업해소에 관한 사항 2. 지역금융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물류업 및 유통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투자유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法	施 行 令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정부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하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중 다음 각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3.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낙후지역과 수도권안의 폐기물매립지에 소재한 기관 4. 수도권안에 소재하거나 설치된 공연시설·전시시설·도서관·지역문화복지시설·의료시설 등으로서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관리하는 기관 5. 수도권안에 소재하거나 설치된 문화유적지·묘지·매립지·남북출입장소·방송시설·철도역·공항과 그 관련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6.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7. 그 밖에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관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그

法	施 行 令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중시·군·구별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낙후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사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기준 및 절차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6조(기업의 지방이전)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인구밀도 2. 광업·제조업의 출하액 3. 그 밖에 광업·제조업사업체수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의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法	施 行 令
	제17조(대학의 지방이전)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 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기준·절차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의 부지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수도권 관리의 기본방향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적정화, 수도권의 삶의 질 개선 및 수도권 경쟁력강화 등 수도권 관리의 기본방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 관리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法	施 行 令
제20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국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안(이하 이 조에서 “협약안”이라 한다)을 일괄 작성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안을 제출받은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위원회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法	施 行 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검토의견을 기초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발전투자협약체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발전투자협약체결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발전투자협약체결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시·도지사과 협약을 체결한다. ⑥시·도지사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에 앞서 해당 시·도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대상사업 및 그 체결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法	施 行 令
제21조(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①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과 관리 2. 국가균형발전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3. 지역혁신체계의 구축현황 4. 지역전략산업의 육성현황 5. 지방대학의 육성 등의 현황 6. 지역과학기술의 진흥현황 7. 지역의 정보화촉진 및 정보통신진흥 현황 8. 지역문화·관광의 육성현황 9.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현황 10. 지역경제활성화의 촉진현황 11.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현황 12.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중요사항	제20조(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국가균형발전계획 또는 주요시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法	施 行 令
제4장 國家均衡發展委員會 등 제22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①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역혁신발전계획 및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9. 수도권 경쟁력 강화 등 수도권 관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장 國家均衡發展委員會 등

法	施 行 令
제23조(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위원은 산업자원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자 2.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장은 위촉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⑤위촉위원은 20인 이내로 하며,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위촉일 현재 1년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⑥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⑦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⑧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위원회의 위원 등) ①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다),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法	施 行 令
제2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임·직원의 파견 요청등)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24조(전문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전문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법 제2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자문위원)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원회에 20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法	施 行 令
제26조(국가균형발전기획단)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둔다. ②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수당 등) 위원장, 위원회등의 위원, 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국가균형발전기획단)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法	施 行 令
제27조(국가균형발전지원단 등) ①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시·도지사가 지역혁신발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에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대통령소속기관 및 국무총리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을 둘 수 있다. ②지원단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부의되는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제반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②기획단의 장은 대통령비서실의 국가균형업무를 담당하는 1급상당 비서관이 겸직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③그 밖에 기획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국가균형발전지원단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에 설치하는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은 지역혁신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위한 교육에 대한 지원,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으로 하여금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法	施 行 令
제28조(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등) ①시·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당해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도협회의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시·도협회의는 의장 1인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시·도협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⑤시·도협회의와 분과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시·도협회의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⑦2 이상의 시·도지사가 상호 협력하여 2 이상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시·도 지역혁신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시·도 협의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협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회의장 등이 추천한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시·도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능별 또는 분야별로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⑤법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기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시·도 협의회, 분과협회의의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法	施 行 令
제29조(시·군·구 지역혁신협회의 설치 등) ①시·군·구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당해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당해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군·구협의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28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시·군·구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시·도 협의회 등에 부의되는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시·도 협의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도 협의회 등의 제반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33조(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시·군·구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구청장이 공동으로 시·군·구 협의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32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시·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法	施 行 令
제5장 國家均衡發展特別會計 제30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개발 및 지역혁신을 위한 사업을 지역의 특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1조(회계의 관리·운용) ①회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세출예산의 배정·자금운영·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3조(소속재산) ①다음 각호의 토지는 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소속의 재산으로 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물납받은 토지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2조 및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매수한 토지	제5장 國家均衡發展特別會計 제3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소관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총괄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法	施 行 令
3.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토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의 재산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운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의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거나 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5조(소속재산의 관리)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의 재산을 임대(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임대하여야 한다. ②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당해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처분의 대상, 기준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용도별·지역별 토지수급현황과 전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法	施 行 令
제34조(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세출) ① 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세법에 의한 주세의 100분의 8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2 및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6.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7.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1항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8.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9.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회계의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11. 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	

法	施 行 令
12.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의 소속재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 1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 1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5.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관련사업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사업 다. 지역의 문화·예술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사업 라. 지역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사업 마. 지역의 특성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3.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제36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중 제외사업) 법 제3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의 사업을 말한다.

法	施 行 令
5.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6.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8. 회계의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9. 그 밖에 지역개발 및 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소요경비의 지원 ③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지역개발 및 토지관리사업의 범위) 법 제34조 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가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제38조(융자의 조건 등) ①법 제34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법 제34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신청절차·원리금 상환 그 밖의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35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지역혁신사업계정의 세입·세출) ①회계의 지역혁신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세법에 의한 주세의 100분의 20 2. 기업예산회계법에 의한 통신사업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法	施 行 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 부터의 전입금 6.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 7.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 8.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9.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회계의 지역혁신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관련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2. 지역전략산업의 육성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3. 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4. 지역의 과학기술의 진흥 및 특성화 관련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5. 지역의 정보화의 촉진 및 정보통신의 진흥에 관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6. 공공기관·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 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소요경비의 지원	

法	施 行 令
7. 지역의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8.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9.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0.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1. 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12. 그 밖에 지역혁신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소요경비의 지원 ③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37조(일시차입금) ①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法	施 行 令
제38조(예산편성절차상의 특례)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의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예산의 신청) ①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의 지원 대상사업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별 예산을 포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신청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②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주체와 대상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회계에서 출연·보조 또는 용자를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 4. 사업의 주체가 부담하는 금액 5.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6. 사업의 효과 및 기대수익 7. 사업의 우선순위·중요도 및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의견 8. 그 밖에 예산신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시·군·구의 예산신청서를 종합하여 일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예산을

法	施 行 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 및 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이하 “사업시행주체”라 한다)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40조(예산의 요구) ①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시행주체를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사업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당초 예산신청내역·조정내역 및 조정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소요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가간 협약의 체결, 재해발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지원이 불가피한 사업 2.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예산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法	施 行 令
제39조(세출예산의 차등지원) ①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있어 차등을 둘 수 있다. ②정부는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편성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41조(위원회의 의견통보) ①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한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중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의견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제시한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총액에 대한 의견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중 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차등지원의 기준)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규모 및 보조비율의 차등을 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결과 3.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낙후지역의 발전정도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확보현황, 당해 사업의 지역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法	施 行 令
제40조(유사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의 통합편성)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목적이 동일한 다수의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세출예산의 통합편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40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목적이 동일한 다수의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목적이 동일한 다수의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편성한 경우 이에 대한 예산의 교부시 해당 사업내에 수개의 경비 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한 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복하여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가시책의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예외) 법 제4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제행사 개최, 재해 발생 등 국가시책의 수행상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法	施 行 令
제42조(예산의 전용)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회계법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필요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5조(예산의 전용범위)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별 세출예산의 총액의 범위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추가 요구하여 반영된 사업에 대한 전용요청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용 요청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3. 그 밖에 전용에 의하여 당초 사업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43조(예산의 이월) ①회계는 세출예산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을	제46조(예산의 이월범위)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계연도의 각 단위 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法	施 行 令
이월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사용하고,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이월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제18조·제21조·제26조 및 제28조 내지 제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法	施 行 令
제46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권한의 위탁)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의한 회계의 재산의 임대·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한국토지공사의 사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위탁재산의 관리실적에 관한 사항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위탁수수료와 감정수수료·신문공고료·등기수수료 등 위탁재산을 임대·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1. 위탁재산을 임대하게 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 사용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2. 위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 매각 또는 매입대금의 1천분의 5 이하의 범위안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法	施 行 令
제47조(회계사무의 위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제9호, 제35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한국토지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재산의 임대·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따로 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회계사무의 위탁)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제9호, 제35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12호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수입·지출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 한국토지공사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3.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②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융자사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융자사무의 관리 및 집행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法	施 行 令
제48조(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 국가는 회계의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원하는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에서 지원하는 경비에 상당하는 주세법에 의한 주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에 활용하여야 한다.	

法	施 行 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내지 제48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土地管理및地域均衡開發特別會計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특별회계의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특별회계의 2004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4조(재산 등의 승계) 종전의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채무는 이 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별표제7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④(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장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⑤(직원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에 의한 직원 및 파견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직원 또는 파견공무원으로 본다.

法	施 行 令
제4조제1항중 “土地管理및地域均衡開發特別會計”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開發制限區域의지정및관리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17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중 “土地管理및地域均衡開發特別會計法에 의한 土地管理및地域均衡開發特別會計”를 각각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國稅와地方稅의調整등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한다. ④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제4조의2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法	施 行 令
⑤農漁村特別稅管理特別會計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⑥首都圈整備計劃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土地管理및地域均衡開發特別會計法에 의한 土地管理및地域均衡開發特別會計”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⑦自動車交通管理改善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⑧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法	施 行 令
⑨環境改善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정부는 수질오염방지 관련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주세법에 의한 주세의 1,000분의 466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 회계로부터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 금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 입을 받을 수 있다.	

[별 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중 제외사업(영 제36조관련)

1. 일반여권발급 등 국가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보조사업
2. 초·중등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가.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나. 장애아교육 지원 등
3. 농어업인에 대한 직불제도와 관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가. 논농업직접지불 나. 친환경직접지불 다. 환경친화형양식어업직접지불 등
4.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가.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
나. 저소득모자·부자가정 지원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 등
5. 수질·대기오염 방지, 폐기물 처리 등 환경개선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가. 상수원보호구역주민 지원
나.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 등
6. 에너지정책의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가. 지역에너지개발 가. 석탄비축 및 진흥지구개발 지원 나.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및 장비 등
7.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
8. 그 밖에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매년 예산안편성지침에서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요내용

< 목 차 >

- I.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 II. 국가균형발전 주요시책
- III.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IV. 국가균형발전추진체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 업 자 원 부

I.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법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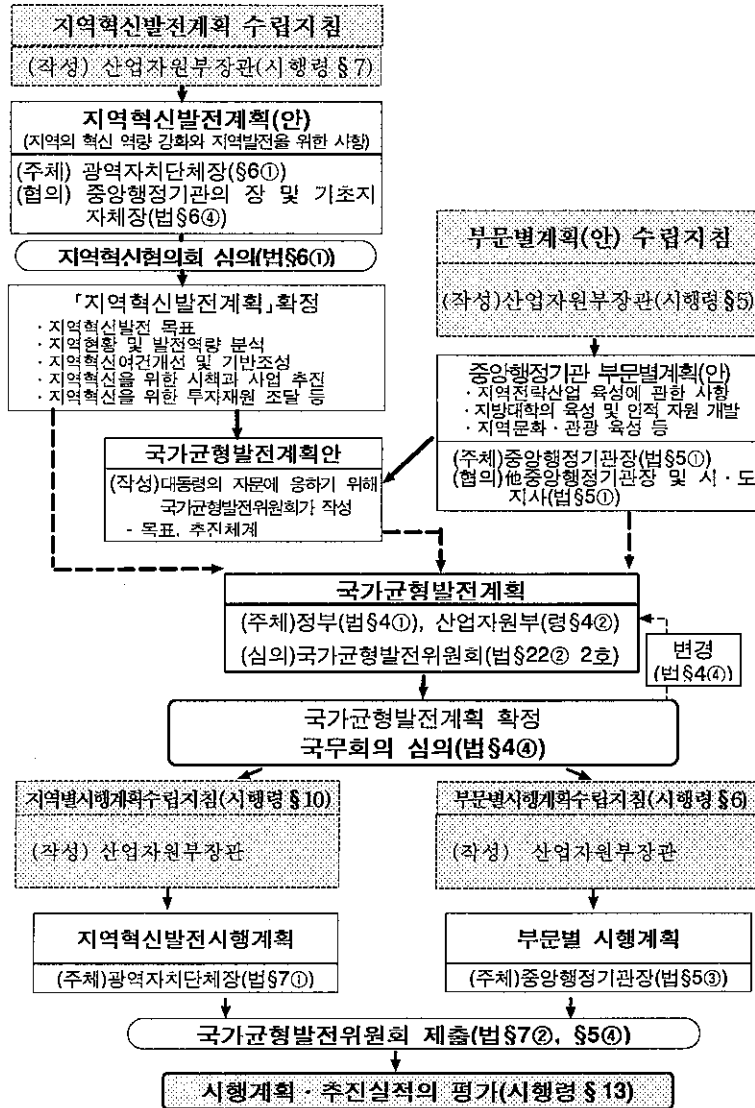
1. 목적 및 수립절차 (법 §4~7)

- ☐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마스터 플랜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
 - 산자부장관은 중앙부처의 부문별계획안, 지자체의 지역혁신발전계획, 균형위의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
 - 16개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

2.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 '03. 6월~ '04.3월 : 부문별 계획(안)·지역혁신발전계획(안) 수립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16개 지자체에 계획 수립 T/F 구성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세부계획 수립 추진
 - *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KIEI) 설치 및 200여명을 Think Tank 풀로 구성
- ☐ '04. 4월 : 총괄부문, 부문별계획, 시·도별 계획 초안 확정
 - 16개 시·도 계획 종합 및 “지역 총괄편” 작성(산자부)
 - 지역발전 비전, 전략산업 육성 방안 등에 대해 최종 조정
 - 중앙부처 「부문별 계획」 종합 및 「총괄편」 최종 확정(위원회)
- ☐ '04. 4월 : 위원회 총괄 취합
 - 위원회에서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의 최종 시안을 확정하고 국정과제 회의 등을 개최(예정)하여 의견을 수렴
- ☐ '04. 5월 :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최종 확정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

<국가균형발전계획 세부수립절차>



II. 국가균형발전 주요시책 (법제3장)

1. 지역혁신사업 (법 § 10~14, § 18, § 19)

- ☐ 지역의 특성화발전을 위해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지방대학육성, 지역문화·관광 육성, 지역과학기술 육성 등의 시책을 추진
 -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은 이전대상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기업의 지방이전시책은 지원대상지역, 지원대상지역 등 지원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2. 지역개발사업 (법 § 15~17)

- ☐ 지역간 불균형시정을 위해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과 주민소득창출기반 확충 등의 시책을 추진
 - 낙후지역 추가지정, 특별회계 지원규모 등의 차등지원 등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추진

3. 지역발전투자협약 (법 § 20)

- ☐ 성과지향적인 지역사업집행을 위하여 최초의 종합적인 지역협약제도로써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운용
 - 지역발전투자협약 관련세부사항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04년 상반기까지 마련하여 '05회계연도부터 시행

4. 연차보고서 작성 (법 § 21)

- ☐ 산자부(국가균형발전지원단)은 국가균형발전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회에 제출
-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과 관리,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현황 등

5. 시행계획 평가 (법 § 9)

- ☐ 균형위(평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
- ☐ 산자부장관은 종합평가보고서를 반영하여 평가 실시
 - 산자부장관은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매년 4.30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
- ☐ 예산처장관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특별회계를 편성

<시행계획 평가 및 특별회계 편성 절차(안)>

추진일정	추진절차
전년도 11.30 (산자부)	지자체 및 부처에 시행계획수립지침 통보
당해연도 2.15 (지자체·부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당해연도 시행계획 제출
3~4월 (균형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평가
4.30 (산자부) 4.30 (지자체)	각 부처 및 지자체에 평가결과 통보 각 부처 및 균형위에 예산신청서 제출
5~6월 (균형위) 5.31 (각부처)	지자체의 예산사업 검토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서 제출
6.30 (균형위)	예산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예산처 등에 통보
7월~9월 (예산처)	균형위 의견을 토대로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국회제출
11.30 (산자부)	지자체 및 부처에 시행계획수립지침 통보

III.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법제5장)

1. 개요 (법 § 30~37)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는 '04년중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05회계년도부터 시행
- 균특회계는 지역개발사업계정 및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
 - 세부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으로 규정

2. 특별회계 예산편성절차 (법 § 38)

① <시·도의 예산신청>

- ☐ 시·도지사는 4월 30일까지 예산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균형위에 제출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신청, 지방비부담능력 및 지역혁신발전계획 등을 토대로 예산신청서를 작성
 - * 예산신청 전까지 시·도의 지역혁신발전계획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군·구가 기추진중인 지역발전계획 등을 감안하여 예산 신청
- 균특회계의 계정(지역개발사업계정, 지역혁신사업계정)별로 예산신청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제출
- 지역개발사업계정은 시·도지사가 시·도별 예산신청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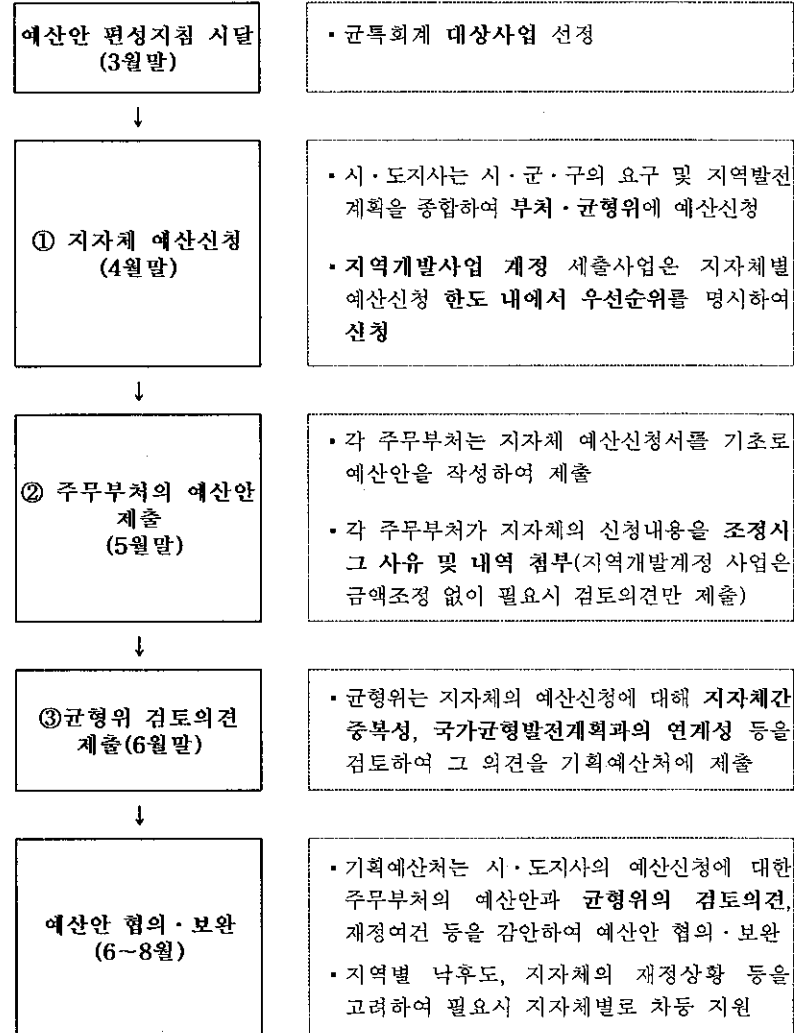
②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요구>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균특회계의 예산안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예산신청서 및 균형위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안을 작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가 신청한 내역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내역 및 조정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 지역개발계정사업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치단체의 신청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필요시 검토의견만 제출
 - 균특회계의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서는 기획예산처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에 동시에 제출
 - 균특회계 지원대상 사업은 다른 회계에 중복하여 요구불가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예산신청서 검토>

- ☐ 균형위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통보
 -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계획과의 정합성, 지방자치단체 사업 우선순위의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
- ☐ 균형위는 2005년도 균특회계 R&D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6월 30일까지 국과위에 제출
 - 각 지방자치단체의 R&D 사업 신청내용과 국가균형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지방자치단체별 중복신청 등을 중점 검토
- ☐ 국과위는 균형위가 제시한 균특회계 R&D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부처별 R&D 사업을 조정한 후 검토의견서와 함께 7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업무 흐름도>



<참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 (법 § 34~35)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이 정한 대상사업

(1) 지역혁신사업계정 (법 § 35)

-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관련사업
- 지역전략사업 육성 관련사업
-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사업
- 지역의 과학기술의 진흥 및 특성화 관련사업
- 지역 정보화의 촉진 및 정보통신의 진흥 관련 사업
- 공공기관·기업 및 대학 등의 지방이전 관련사업
- 기타 지역혁신 촉진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하는 사업

(2) 지역개발사업계정 (법 § 34)

□ 지자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등

-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관련사업
- 지역사회기반시설이 확충 및 개선 관련사업
- 지역의 문화·문화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사업
- 지역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관련사업
-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 관련사업
-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된 사업
- 기타 지역개발 등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하는 사업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규정사항(시행령 제36조 별표)
 - 여권발급 등 국가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경비보조
 -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보훈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 초·중등 교육자원을 위한 교육자치단체 보조
 - 수질오염방지, 대기오염 방지, 폐기물 처리 등 환경개선 관련보조
 - 에너지정책 수행 관련 보조
 - 논농업직불, 친환경농업직불 등 농업업인에 대한 직불 관련보조
 -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의 지방도구조개선 사업('06년까지)
 - 기타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하는 사업
- 지방자치사무이거나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전환된 사업

IV. 국가균형발전추진체계 (법제4장)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법 § 22~27)

(1) 기능 (법 § 22)

□ 대통령 소속하의 자문기구로 주요 균형발전시책에 관하여 심의 수행

< 주요심의사항 >

- 국가균형발전 기본방향 등의 조정 ·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 국가균형발전계획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
-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 등 ·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 지역혁신발전계획 등 · 수도권 관리의 기본방향
- 국가균형발전시책등의 평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구성 (법 § 23)

□ 당연직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등 30인으로 구성

- 위원장 : 민간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 당연직위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산자부, 예산처, 제경부 · 교육부 · 행자부 · 과기부 · 문광부 · 농림부 · 정통부 · 환경부 · 건교부 · 해수부장관
- 민간 위원
 -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지자체관련 협의회의 대표자가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
 - *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비수도권지역 인사로 구성

(3) 국가균형발전기획단 (법 § 26)

- ☐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중앙부처 및 시·도정책의 실무적 조정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

(4)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법 § 27)

- ☐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업무 및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 지원을 위하여 산자부에 국가균형발전지원단 설치
- 지역혁신통계DB 구축, 지역혁신체계관련 교육, 연차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수행

2. 지역혁신협의회 (법 § 28~29)

(1) 기능

- ☐ 지역혁신계획 등의 심의기구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지역의 산·학·연 전문가가 중심이 된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

<주요심의사항>

-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당해 지역의 주요국가균형발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구성

- ☐ 시·도지사가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추천한 자중에서 민간위원 위촉
- ☐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는 60인 이내(2이상의 시·도 공동구성시 1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는 30인이내(2이상의 시·군·구 공동구성시 50인이내)로 구성